

의안번호	2217372
의 퇴 인	박정하 의원
회 답 일	2026.3.31.
추계번호	26F137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기업도시개발구역 이전 기업 법인세 등 감면제도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1조의17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제1항제1호	○ 기업도시개발구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신설 -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증가 등의 요건 충족시 법인세·소득세를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 - 적용기한: 2028년 12월 31일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1조의17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제1항제1호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,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
 - 해당구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·소득세를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 - 적용기한: 2028년 12월 31일
-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수 및 소득세수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의 소득, 투자금액 및

고용인원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의 부재로 인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2026년 현재 기업도시개발구역은 총 4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, 구역별 기업 수,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음

[표 1]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입주기업 현황

구분	면적 (만㎡)	사업 기간	총사업비 (억원)	입주기업 수	투자금액 (억원)	고용인원 (명)
충주	701	'07-'12	6,352	23개사 가동	15,687	4,214
원주	529	'08-'19	10,425	35개사, 15개사 예정	9,281	4,232
태안	1,546	'07-'30	12,982	11개사, 1개사 예정	2,534	760
영암· 해남	3,379	'06-'30	32,611	7개사	4,473	183

※ 자료: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(출처: 국토교통부)

- 2020~2024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현황은 아래와 같음

[표 2]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실적 현황

(개, 억원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업체수	3	3	4	3	6
감면 실적	56	8	49	72	36

※ 자료: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, 대한민국정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김주현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주현	02-6788-4836	kjh@assembly.go.kr